

기존규제정비위원회  
전체회의 (19.9.27.)

---

#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주요 성과

---

2019. 9. 27.

금 융 위 원 회  
자 산 운 용 과

# 목 차

I . 추진배경 .....	1
II .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개요 .....	2
III . 추진성과 .....	3
1. 심의결과 개요 .....	3
2. 개선과제(총 24건) 주요 내용 .....	4
(1) 신규 개선과제 .....	4
(2)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과제 .....	6
IV . 향후 계획 .....	8
참고1. 개선과제 목록 (총 24건) .....	9
참고2. 존치과제 목록 (총 72건) .....	12

## I. 추진배경

-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시 규제를 폐지·완화하는 「규제입증책임제」를 추진 중('19.1.~)
  - \* '19.1.15. 대통령 주재 '기업인과의 대화'시 건의사항 반영
- 국조실 총괄하에 우선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, 추후 법령 전반으로 확대 예정
- 금융위는 총 1,100여건의 명시적·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, 명시적 규제(789건)는 「기존규제정비위원회\*」를 통해 정비\*\* 중
  - \* 금융위 부위원장(위원장), 규제·금융정책 전문가,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
  - \*\* 보험('19.5.), 자본시장('19.6.~) 등 업권별 순차적으로 점검
- (보험) 총 98건의 규제 중 심층심의\*가 필요한 31건을 검토하여 23건을 개선(74.1%)하는 것으로 확정·발표('19.5.)
  - \* 존치 필요성외에도 규제수준의 적정성, 개선방안 등까지 집중 심의
- (자본시장) 국조실 등록 규제 총 330건을 중심으로 증권(8월), 자산운용(9월), 회계·공시(10월), 자본시장 인프라(11월) 순으로 검토 중
  - 증권업은 총 86건의 규제 중 28건을 심층심의하여 19건을 개선(67.9%)하는 것으로 확정·발표('19.8.)
- ※ 비명시적 규제 300여건은 현장소통·옴부즈만 등을 활용하여 정비 추진 중 (행정지도 39건 → '19.2. 정비완료, 협회 모범규준 등 그림자규제 → 개선 검토 중)
- 자산운용 분야의 경우 「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」 과제를 발표('19.3.)하는 등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 중
  - 이번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·정비

## II.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개요

- (추진대상) 국조실 등록 규제를 기본대상\*으로 하되, 검토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등록규제를 추가\*\*하여 총 96건을 대상으로 선정

\* (기본) 국조실 등록규제 97건 중 중복등록·삭제된 10건을 제외한 87건

\*\* (추가) 금융당국 검토, 업계의견 등 감안시 개선 필요성이 있는 9건

- (추진방향) 대상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, 특히 자산운용 분야 경쟁력 강화,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심으로 심의

### [규제 심의 방향]

- ① 「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」 추진현황 점검
- ② 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
- ③ 투자·창업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(클라우드펀딩 관련)
- ④ 기타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 등 규제 정비

-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'선행 + 심층심의\*'로 이원화하여 진행

\* (선행심의) 소비자보호,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 
(심층심의)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·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

- (추진경과) 단계적으로 현장·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 규제를 선정하고, 기존규제정비위 심의(9.27.)를 통해 확정

- 「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(19.3. 발표)」 과제 발굴을 위해 업권 간담회(20여회) 등을 통해 현장 애로 청취('18.3.~'19.3.)

- 이번 기존규제정비위 심의를 위해 금융당국 검토와 병행하여 업계·전문가 의견 추가수렴('19.6.~9.)

- ('19.6.~7.) 금융협회를 통해 업계 개선의견 수렴

- (9.9.~17.) 선행심의 규제(안)에 대한 기존규제정비위 민간위원 (금융정책·제도, 규제, 자본시장 전문가) 의견 수렴

- (9.23.~25.) 선행 및 심층 규제개선 실무(안)에 대해 기존규제 정비위 민간 위원·업계 의견 수렴

### Ⅲ. 추진성과

1

#### 심의결과 개요

- (개선율) 총 9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\*(67건) 및 심층심의(29건) 대상으로 구분하고, 심층심의 대상 29건 중 24건(82.8%)을 개선

\* 소비자보호, 건전성 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로 선정

< 심의결과 요약 >

대상규제	⇒	선행심의	⇒	심층심의	개선(A)	존치(B)	개선율(=A/[A+B])
96건		67건		29건	24건	5건	82.8%

- (유형별)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최다(12건)이며,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(8건), 투자자 보호(4건) 순

- 개선율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가장 높으며(100%), 시장 질서 유지 및 건전성, 영업행위 규제가 동일하게 80%

<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>

구분	대상 규제	선행 심의	심층심의			
			개선 (A)	존치 (B)	개선율 (=A/[A+B])	
투자자 보호(정보제공, 피해 예방)		17	13	4	0	100%
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(이해상충 방지, 감독 등)		25	15	8	2	80%
영업행위 규제	금융업 등록·상품(진입·제조 등)	22	19	3	0	100%
	수수료·불건전영업행위(판매)	15	9	4	2	66.7%
	수탁 자산의 운용 등(판매 후)	17	11	5	1	83.3%
	소계	54	39	12	3	80.0%
합계		96	67	24	5	82.8%

**(1) 신규 개선과제 (총 7건)**

◇ ① 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제고, ② 벤처·중소 기업 투자 활성화(클라우드펀딩) 등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

**① 경쟁촉진, 업무효율 제고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**

□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\*) 도입 [금투업규정 7-16]

\* (Money Market Fund)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

○ (현행) 시행령에(§241①) MMF의 투자대상을 '원화' 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, 감독규정에 운용시 준수사항 등\*을 규정

\* 원리금·거래금액이 환율·증권의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 편입 금지, 현금·국채 등 자산의 비중이 10% 미만시 현금·국채 등 외 자산 취득 금지 등

⇒ (개선)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에 '외화' 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,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

□ 신탁재산간 자전거래\* 규제 완화 [금투업규정 4-90]

\*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

○ (현행)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엄격한 요건\*하에 예외적으로 허용

\*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(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), ②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③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, ④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·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(①~④ 모두 충족)

⇒ (개선) 투자자(매도·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)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\*

\* 이 경우도 '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' 외의 요건(②~④)은 충족 필요

-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 [금투업규정 §7-54]
  - (현행)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
  - ⇒ (개선) 증권사의 이중보고 부담 완화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을 금투협회로 일원화
-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완화 [금투업규정 §4-95]
  - (현행)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
  - ⇒ (개선) 투자자 조회 편의,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 신탁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(공시 대상社)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
    - \* 다만,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시 제공할 의무는 부여

## 2 벤처·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

-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 [증권의발행·공시규정 §2-2의6]
  - (현행)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‘전문 투자자 등’ 범위의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
    - \* 전문투자자 + 전문성·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(전문엔젤투자자 등)
  - ⇒ (개선) 전문투자자 등에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\*를 추가
    - \* 초기창업자(업력 3년내)에 대한 투자·보육 업무 수행(중소기업창업지원법)
-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 확대 [금투업규정 §1-9]
  - (현행) 업력(원칙 7년이내)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 요건으로 사업 분야가 프로젝트 사업\*인 경우 등을 규정
    - \* 신기술·신제품개발, 문화산업, 스포츠산업 등
  - ⇒ (개선) 발행기업을 모든 중소기업(사행성 업종 등 제외)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\*을 추진 중이며, 법 개정 후 현행 조문 삭제
    - \*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('19.8.~, 정부안)

## (2)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과제 (총 17건)

◇ '19년 3월 개선과제 발표 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입법예고 ('19.3.29.~5.8.) 실시 → 연내 개정 완료 추진

### ①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

-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\*의 최소투자금액(500만원) 규제 폐지 [금투업규정 §4-51의2]
  - \* 사모펀드 직접투자가 제한되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간접 투자를 위해 도입(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해당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에 투자)
  - ※ 최소투자금액의 하한을 규정하는 시행령 조문 삭제와 병행 추진 중
- 투자일임·신탁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일임·신탁업자의 투자성향 확인 주기 완화(매분기 → 연 1회) [금투업규정 §4-73 등]
  - \* 단, 투자자에게 투자성향 등 변경시에 회신해달라는 내용을 매분기 통지(투자자는 필요시 회신)

### ② 규제 취지,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 합리화

-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의 변경을 “대면”(현행)뿐 아니라 “비대면”(개선) 방식으로도 허용 [금투업규정 §4-82]
  - \* ①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, ② 운용대상의 종류·종목, 비중, 위험도 등을 투자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기재하는 경우 허용
- 시장대표지수(예 : KOSPI 200)를 추종하는 ETF\*에 한하여 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이 30%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\*\* [금투업규정 §7-26]
  - \* (Exchange Traded Fund) 특정지수의 수익률을 얻도록 설계된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 가능
  - \*\* 단,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허용

- 증권사의 신탁도 투자자의 주식 매매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 허용 [금투업규정 §4-93]
  - \* 신탁업자인 증권사는 신탁보수 외의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여 투자자가 지나치게 잦은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매매비용 청구 불가 (증권사의 투자일임 계좌인 랩어카운트는 '16.1. 허용)
  
- 부동산펀드 운용사의 인가·등록시 요구되는 부동산펀드 운용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(경력인정 기관 범위 확대\*) [금투업규정 별표2]
  - \* (현행) 부동산투자회사·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 → (개선) 매출·상근직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 관리업·개발업, 회계법인 등 추가
  
- 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\*의 기준가격 산정시 시가평가 도입 (자본시장법 시행령 §260 개정 중)에 따른 규제 정비 [금투업규정 §7-15, §7-36]
  - \* (Money Market Fund)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
  
- ①시가평가·②장부가평가 대상 MMF를 규정\*하고, 각 유형별 편입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조정\*\*
  - \* ① (시가) 국채·통안채 등 편입비율이 30% 이하 / ② (장부가) 30% 초과
  - \*\* ① (시가) 75일 → 120일 / ② (장부가) 75일 → 60일

### 3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

- 펀드재산 운용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자 외에게 투자자문을 받은 경우도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화\* [금투업규정 §4-63]
  - \* 현행은 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을 받은 경우만을 규정하여 그 외의 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는 불분명
  
- 펀드재산 중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증권 등 일부 금투상품과 같이 부실화된 경우의 평가방법\*을 규정 [금투업규정 별표 18]
  - \* 부실단계를 분류(부실우려·발생·개선·악화)한 후, 단계에 따라 달리 상각

## IV. 향후 계획

### □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

- 신규 개선과제는 '19년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
  - 다만,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\*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

\* 외화표시 MMF 도입, 클라우드펀딩 발행기업 확대

- 「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」 관련 과제(17건)는 '19년말까지 감독규정 개선 완료

### □ 자본시장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

-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(등록규제 151건 등)는 회계·공시 분야(10월),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(11월) 순으로 심의

### □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

- 연내 자본시장 분야 점검 완료 후 타업권도 순차적으로 추진

# 참고 1

## 개선과제 목록 (총 24건)

연번	규칙명	규제명	규제 내용
4	금투업규정 제1-9조	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	<p><b>기존</b> 업력(원칙 7년이내)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 요건으로 사업 분야가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등을 규정</p> <p><b>개선</b> 발행기업을 모든 중소기업(사행성 업종 등 제외)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, 법 개정 후 현행 조문 삭제</p>
74	금투업규정 제4-49조	집합투자업자 명의 자산 취득	<p><b>기존</b>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스왑거래 할 수 있는 장외파생거래 대상을 통화스왑(CRS), 금리스왑(IRS)으로 규정</p> <p><b>개선</b>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스왑거래 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외환 등 모든 자산으로 확대</p>
76	금투업규정 제4-63조	불건전 영업행위 금지	<p><b>기존</b>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을 받은 경우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 의무화</p> <p><b>개선</b> 투자자문업자 이외의 업자에게 외부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내부적 투자판단을 거치도록 명확화</p>
84	금투업규정 제4-73조	일임계약시 서면교부 자료 기재사항	<p><b>기존</b>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서면교부</p> <p><b>개선</b> 투자자 정보 파악 및 서면교부 의무화를 분기별 1회 이상에서 연 1회로 완화</p>
85	금투업규정 제4-77조	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	<p><b>기존</b> 투자일임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정보 파악 필요</p> <p><b>개선</b> 투자자 정보파악 의무를 분기별 1회 이상에서 연 1회로 완화</p>
89	금투업규정 제4-82조	신탁업무의 방법 등 규정	<p><b>기존</b> 특정금전신탁 계약 및 운용방법 변경시 대면 방식만을 허용</p> <p><b>개선</b>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신탁계약 체결 및 운용방식 변경 허용</p>
92	금투업규정 제4-93조	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	<p><b>기존</b> 투자신탁업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를 부과하고, 신탁보수 외 수수료 수취를 금지</p> <p><b>개선</b> 투자자 정보 파악 주기를 연 1회로 완화하고, 매매계약서상 기준 초과시 실비범위 내에서 매매비용 수취 허용</p>
95	금투업규정 제4-95조	신탁업자의 회계감사 보고서 비치의무	<p><b>기존</b>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</p> <p><b>개선</b> 투자자 조회 편의,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 신탁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(공시 대상회)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</p>

연번	규칙명	규제명	규제 내용
125	금투업규정 제7-15조	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의 환매조건부매도 범위	<p><b>기존</b> MMF의 집합투자재산 가중평균 잔존만기 기간 한도(75일)를 일률적으로 규정</p> <p><b>개선</b> 법인대상 MMF중 일부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에 따른 가중평균 잔존만기 차등화</p> <p>i) 가격변동성이 높은 MMF(국채, 통안채 등 안정 자산 편입비율이 30% 이하) : 시가평가 도입, 잔존만기 연장(75일 → 120일)</p> <p>ii) 가격변동성이 낮은 MMF(국채, 통안채 등 안정 자산 편입비율이 30% 이상) : 장부평가 유지, 잔존만기 축소(75일 → 60일)</p>
126	금투업규정 제7-16조	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의 제한 등	<p><b>기존</b>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에 편입이 제한되는 투자대상자산과 운용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</p> <p><b>개선</b> 상품 다양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외화 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, 감독규정에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</p>
136	금투업규정 제7-26조	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ETF)의 요건	<p><b>기존</b> 지수추종 ETF의 경우 펀드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는 특정종목의 편입 제한</p> <p><b>개선</b>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(KOSPI 200, KRX300 등)에 한해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개별종목 편입 허용</p>
143	금투업규정 제7-36조	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의 집합투자재산 평가 특례	<p><b>기존</b> MMF의 장부가 평가방식,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 한도(±0.5%)를 규정</p> <p><b>개선</b> 법인대상 일부 MMF에 시가평가 도입 관련 시가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MMF를 규정</p>
151	금투업규정 제7-54조	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	<p><b>기존</b> 외국펀드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·금투협회에 보고</p> <p><b>개선</b> 보고대상을 금투협회로 일원화</p>
170	금투업규정 제4-108조	정보제공기준 등에 관한 내부통제	<p><b>기존</b>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금투업자의 내부통제 기준 중 준용해야할 사항 규정</p> <p><b>개선</b> 일부 준용조문이 금투업규정에서 지배구조감독 규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</p>
311	증발공규정 제2-2조의6	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	<p><b>기존</b> 클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'전문투자자 등' 범위의 구체화</p> <p><b>개선</b> 전문투자자 등에 창지법상 창업기획자를 추가</p>
미등록1	금투업규정 제1-5조	금융투자업자의 적용 배제	<p><b>기존</b> 금융투자업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자로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(투자일임재산을 조건부 '매매'로 운영하는 경우) 등을 규정</p> <p><b>개선</b> 투자일임재산을 조건부 '매수'로 운영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를 금융투자업 적용에서 제외 하도록 명확화</p>

연번	규칙명	규제명	규제 내용
미등록2	금투업규정 제4-51조의 2	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최소 투자 금액 제한	<p><b>기존</b>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투자 공모재간접 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정(500만원)</p> <p><b>개선</b>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투자 공모재간접 펀도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</p>
미등록3	금투업규정 제4-52조의 2	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(ETF)의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 한도	<p><b>기존</b>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는 순자산의 200%로 제한하고 있으나, 인덱스펀드의 위험 평가액 한도는 순자산의 100% 이내로 제한</p> <p><b>개선</b> 인덱스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ETF와 동일한 순자산의 200%로 완화</p>
미등록4	금투업규정 제4-55조	운용 담당자와 매매 담당자간 겸직금지 예외	<p><b>기존</b>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집합 투자업자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 예외를 허용하나 '프로그램매매'의 정의 불명확</p> <p><b>개선</b> "사전에 결정된 투자전략에 따른 차익거래로서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"로 예외 규정 명확화</p>
미등록5	금투업규정 제4-86조	부동산 신탁업자의 자금 차입	<p><b>기존</b>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신탁재산으로 자금 차입시 해당사업 소요자금의 70%이내에서 자금차입 허용</p> <p><b>개선</b>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과 부동산위탁사업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을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% 이내까지 자금차입 허용</p>
미등록6	금투업규정 제4-90조	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	<p><b>기존</b>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</p> <p><b>개선</b> 투자자(매도·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)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되고 그 밖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</p>
미등록7	금투업규정 제7-42조	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	<p><b>기존</b> 은행 임직원이 집합투자업, 신탁업, 일반사무 관리회사 업무와 겸직할 수 있는 은행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, 일부 규제 내용이 불분명</p> <p><b>개선</b> 임직원이 겸직 가능한 은행업무 요건중 이해 상충방지체계 내용을 구체화</p>
미등록8	금투업규정 별표 2	금융투자업 인가 등록시 인적 요건	<p><b>기존</b>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사관리회사에 비해 부동산펀드 운용사의 운용전문인력의 범위 협소</p> <p><b>개선</b>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인정 기관 범위를 합리적 수준에서 확대</p>
미등록9	금투업규정 별표 18	집합투자재산 보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 기준	<p><b>기존</b> 집합투자재산 중 일부상품(채무증권, 파생결합 증권 등)의 경우, 부실화 발생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, 대출채권은 평가방법 부재</p> <p><b>개선</b> 자산평가기준 적용범위에 대출채권도 추가</p>

□ 금융투자업규정 53건

연번	규칙명	규제명
24	제7-1조	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시 자본금 요건
25	제7-3조	공모펀드 등록시 소규모펀드 투자자보호 계획 제출
26	제7-7조	기록보관의 기간
27	제7-8조	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
33	제2-34조	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
53	제4-20조	불건전 영업행위 금지
73	제4-48조	집합투자증권 판매 등 업무처리
75	제4-56조	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의 거래제한 예외
77	제4-64조	집합투자기구 운용인력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
78	제4-65조	집합투자업자의 성과보수 제한
79	제4-66조	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투자공시
80	제4-67조	수시공시에 있어서의 부실자산에 대하여 정함
81	제4-68조	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영업보고서 작성
82	제4-69조	협회의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실적의 비교·공시 방법을 규정
83	제4-70조	집합투자재산의 파생상품 운용규제
86	제4-78조	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명시
87	제4-79조	역외자문·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 기재사항 명시
88	제4-80조	유사투자자문업 신고·보고서식
90	제4-88조	겸영신탁사의 여유자금 운용방법 규정
91	제4-92조의2	인수합병 신탁업자의 특례
94	제4-94조	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
123	제7-10조	투자신탁의 해지 승인
124	제7-12조	투자신탁의 합병
127	제7-17조	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채무증권 신용평가등급의 제한
128	제7-18조	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채무증권 신평등급 하락시 조치
129	제7-19조	MMF의 투자한도 예외범위 조정
130	제7-20조	단기금융상품 운용시 집합투자업자의 준수규정
131	제7-21조	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시장성 없는 자산투자비율
132	제7-22조	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시장성 없는 자산
133	제7-23조	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정·설립시 등록신청서 기재사항
134	제7-24조	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 비용부담
135	제7-25조	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
137	제7-27조	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
138	제7-28조	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정참가회사
139	제7-29조	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
140	제7-30조	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
141	제7-33조	집합투자증권의 환매금액 및 이익금
142	제7-35조	집합투자증권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
144	제7-38조	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
145	제7-40조	집합투자재산의 증권 중 집중예탁대상되는 증권

연번	규칙명	규제명
146	제7-41조	신탁업자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공시
147	제7-45조	채권평가회사 등록
167	제4-104조	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
168	제4-105조	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방법 및 절차
169	제4-106조	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 설정
171	제4-109조	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업무방법·내부통제기준의 변경
172	제4-111조	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투자자에 대한 통지
174	제4-112조	청약증거금의 예외적 양도
176	제7-8조의2	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
180	제4-89조의2	관계인수인증권 거래 제한
183	제7-11조의2	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
184	제7-31조의2	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율
185	제7-41조의4	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

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건

연번	규칙명	규제명
309	제2-2조의4	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등
310	제2-2조의5	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등
312	제2-2조의7	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위 및 방법·절차

□ 퇴직연금감독규정 16건

연번	규칙명	규제명
315	제3조	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
316	제4조	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
317	제5조	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 보고
318	제6조	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
319	제7조	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에 대한 심사 등
320	제11조	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투자한도
321	제12조	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
322	제17조	퇴직연금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
323	제18조	퇴직연금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의 보고
324	제21조	퇴직연금 약관 등의 변경 명령
325	제22조	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등
326	제23조	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의무
327	제14조의2	적립금운용지시의 이행 방법
328	제15조의2	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 금지
329	제15조의3	특정 운용방법 선택 강요행위 금지
330	제15조의4	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 금지